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동물성 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 수입허용”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하여”를 “통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검사방법과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중 국내 반입차단 원료 · 성분 포함여부 조사

2. 분석적 검사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중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 5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경험 유무,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축산물(특별위생관리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축산물, 동물성 식품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이표에서 “축산물 등”이라 한다)”으로, “가공요건,”을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 또는”으로,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을 “축산물 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축산물에”를 “축산물 등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등”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을 “축산물 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을 “축산물 등의 수입허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본문 중 “축산물”을 “축산물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출국별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 등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을 “축산물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 등별”로 한다.

별표 8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의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되어 사용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중 “원료 및”을 “원료,”로, 같은 목 단서 중 “향료로 한정한다”를 “향료,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원료 및”을 “원료,”로, 같은 목 단서 중 “향료로 한정한다”를 “향료,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 위반사항란 가목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 제공”을 “정보를 입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 위반사항란 나목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식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정보 Food Information	생산 품목 Type of food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유형 Types of food set b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pursuant to Articles 7 and 9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s 14 and 15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 [] 가공식품(동물성 식품 제외) Processed foods excluding Animal products [] 기구·용기·포장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 수산물 Fishery products []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 건강기능식품 Functional health foods [] 동물성 식품 Animal products
-----------------------------	-----------------------	---

별지 제25호서식 1쪽의 축산물의 처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축산물: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14일, 정밀검사 14일 [냉장보관 축산물(조제유류 및 가온보존시험대상 제외) 무작위표본검사 7일 (다만, 리스테리아 및 다이옥신 검사 대상 10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이력추적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동물성 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⑧ ----- 제7항----- ----- ----- ----- -----.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u>축산물 수입허용</u>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 정부가 해당 <u>축산물</u> 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 ----- <u>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u> ----- ----- ----- ----- ----- ----- ----- -----. 1. ----- <u>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u> -----

하는 경우

2. (생 략)

3. 그 밖에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와 현지실사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

2. (현행과 같음)

3.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

② -----

----- 통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

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1. ~ 7. (생 략)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작 제

10.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검사방법과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중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조사

2. 분석적 검사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중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실

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경험 유무,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 등을 전자적

으로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